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5. 01. 01 ~ 2025. 12. 31

대표이사 확인서

본인은 (주)HB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03. 09.

주식회사 HB저축은행

대표이사 문규현



목 차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 5 -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 5 -
나. 지배구조 현황.....	- 6 -
다. 관련규정.....	- 7 -
2. 이사회.....	- 8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8 -
나. 구성.....	- 12 -
다. 활동내역.....	- 17 -
라. 평가.....	- 23 -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 23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4 -
가. 역할 (권한과 책임).....	- 24 -
나. 구성.....	- 24 -
다. 선임기준.....	- 25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26 -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 28 -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43 -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43 -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62 -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 63 -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64 -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 66 -
바.	사외이사 평가.....	- 66 -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68 -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 68 -
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70 -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내역.....	- 70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71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 71 -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71 -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72 -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72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	- 73 -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73 -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73 -
6.	감사위원회.....	- 73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73 -
나.	구성.....	- 76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76 -
라.	감사보조조직 등.....	- 82 -
7.	위험관리위원회.....	- 83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83 -
나.	구성.....	- 84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85 -
라. 위험관리 전담조직 등	- 91 -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 계획.....	- 91 -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 91 -
가.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활동 내역.....	- 91 -
나. 기타.....	- 91 -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 92 -
가. 총괄.....	- 92 -
나. 구성.....	- 92 -
다. 권한과 책임.....	- 93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95 -
2. 보수체계.....	- 96 -
가. 주요사항.....	- 96 -
나. 보수 세부사항.....	- 99 -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 100 -
정 관.....	- 104 -
지배구조내부규범	- 125 -
이사회운영규정	- 140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	- 145 -
감사위원회규정	- 147 -
위험관리기준	- 154 -
보수위원회운영규정.....	- 161 -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주식회사 HB저축은행(이하 '당사'라고 합니다)은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는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25년 12월말 현재 이사회는 57.1%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간의 정기적, 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등 주요 내규와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포함)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회사홈페이지(통일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B저축은행 홈페이지 : www.hbsb.co.kr 『은행안내』 → 『경영공시』 → 『결산공시』)

당사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도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3) 지배구조의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의장	관련규정
이사회	최고의사결정기구	4명/7명	정재욱(사외이사)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원후보 추천	3명/3명	이호준(사외이사)	정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감사위원회	감사업무관련 총괄	2명/3명	이상협(사외이사)	정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	3명/3명	이호준(사외이사)	정관, 위험관리기준
보수위원회	보수의 결정	3명/3명	이상협(사외이사)	정관,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다. 관련규정

- 첨부 1. 정관
- 첨부 2. 지배구조내부규범
- 첨부 3. 이사회 운영규정
-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첨부 5.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첨부 6. 위험관리기준
- 첨부 7.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의 이사회는 건전 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지배구조법 제 15조 제 1항 제 1호, 정관 제 31조 제 1항 제 4호)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

경영계획의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경영계획은 경영진에서 2024년 12월 초에 경영목표 및 전략을 구체화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2025년 01월 22일 개최된 제 1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경영계획은 경영진에서 2025년 12월에 초에 경영목표 및 전략을 구체화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2025년 12월 30일에 개최된 제 10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승인된 경영계획은 추후 이사회를 통하여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2026년 경영목표 및 전략

당사는 중장기 미래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을 경영목표로 2026년 당기순이익 목표(K-GAPP 기준 203억)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자산의 적극적인 회수 및 신규 수익원 확보 등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나) 정관변경 및 주요 규정 등의 변경 (지배구조법 제 15조 제 1항 제 2호, 정관 제 31조 제 1항 제 1의 2)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과 주요규정의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2025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정관 변경안과 주요규정의 제·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정관 변경 안 및 주요규정 제·개정안

구분	안건	주요내용
2025년 제 4차 이사회 (2025.04.10)	●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반영
2025년 제 4차 이사회 (2025.04.10)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 결의사항에 대한 조항 개정
2025년 제 4차 이사회 (2025.04.10)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사항 반영
2025년 제 5차 이사회 (2025.05.15)	● 채무조정내부기준 개정	●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반영
2025년 제 5차 이사회 (2025.05.15)	●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 및 지침 개정	● 관련 업무 지침 및 세부지침 표준(안) 반영
2025년 제 5차 이사회 (2025.05.15)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 결의사항에 대한 조항 개정

(다) 예산 및 결산승인 (지배구조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정관 제 31조 제 1항 제 5호)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경우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2024년 12월 초에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2025년 01월 22일 개최된 제 1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2026년 예산은 2025년 12월 초에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2025년 12월 30일에 개최된 제 10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승인된 예산은 추후 이사회를 통하여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2026년 예산안 주요내용

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이사 보수한도는 6.3 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25년 01월에 초안을 마련하였고, 2025년 02월에 외부감사인 검토를 거쳐 2025년 02월 13일에 개최된 제 2차 감사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2025년 02월 13일 개최된 제 2차 이사회에서 2024년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26년 01월에 초안을 마련하였고, 2026년 02월에 외부감사인 검토를 거쳐 2026년 02월 12일에 개최된 제 2차 감사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03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2026년 02월 12일 개최된 제 1차 이사회에서 2025년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2025 회계연도 주요 결산 승인 내역

(K-GAAP) 총자산 : 1 조 2,685 억원, 총부채 : 1 조 1,935 억원, 총자본 : 750 억원, 당기순이익 : 35 억원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4 호, 정관 제 31 조 제 1 항 제 2 의 2)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 양수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2025년에는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없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제정·개정 및 폐지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5 호, 정관 제 31 조 제 1 항 제 16 호)

당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승인 및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또한, 법령준수, 건전경영활동, 임직원의 준수사항 등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보고를 통하여 항목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제·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제·개정안

구분	안건	주요내용
2025년 제 4 차 이사회 (2025.04.10)	● 내부통제규정 개정	●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반영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준의 수립과 평가에 관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위험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매 분기마다 위험관리 현황에 대한 검토 후 주요내용을 이사회에 보고 하는 등 효율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5 의 2 호, 정관 제 31 조 제 1 항 제 16 의 2 호)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준수 및 건전경영활동 등과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평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각 담당부서 또는 위원회로부터 정기적 보고를 받는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보고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구분	안건	감독 및 보고주체
2025년 제 2 차, 제 5 차, 제 6 차, 제 9 차 이사회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보고(분기별)	● 감사위원회
2025년 제 2 차 이사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연 1 회)	● 감사위원회
2025년 제 5 차, 제 8 차, 제 10 차, 제 14 차 위험관리위원회	● 리스크관리 평가 결과 보고(분기별)	● 위험관리위원회

(사)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지배구조법 제 15조 제 1항 제 6호, 정관 제 31조 제 1항 제 10의 2)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 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은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릅니다.

2025년에는 2025년 11월 18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로 문규현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2025년 12월 30일 개최된 제 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 후 2025년 12월 30일 제 10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2025년에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관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지배구조법 제 15조 제 1항 제 7호, 정관 제 31조 제 1항 제 10의 3)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및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대주주와 임원과의 거래 등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여하는 특별한 이해관계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사회에서 이해상충행위 관리 및 감독 관련 심의·의결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구분	안건	주요내용
2025년 제 2차 이사회 (2025.02.13)	● 최대주주와의 후순위예금 거래 승인	● BIS 비율 개선을 위한 후순위예금 거래
2025년 제 3차 이사회 (2025.03.12)	● 최대주주와의 후순위예금 거래 변경 승인	● BIS 비율 개선을 위한 후순위예금 거래
2025년 제 5차 이사회 (2025.05.15)	● 최대주주와의 후순위예금 거래 승인	● BIS 비율 개선을 위한 후순위예금 거래
2025년 제 6차 이사회 (2025.08.05)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기업자유예금 거래
2025년 제 10차 이사회 (2025.12.30)	● 최대주주와의 후순위예금 거래 승인	● BIS 비율 개선을 위한 후순위예금 거래

나. 구성

(1) 총괄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3인 이상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해야 합니다. (정관 제 27 조)

2025년 12월말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모두 7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및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정관 제 28 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연임이 가능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 재임기간이 6년으로 제한됩니다. (지배구조법 제 6 조) 이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지배구조법 제 5 조)과 적극적 자격요건(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 요건으로는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여야 하며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 당사 이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025년 12월말 현재 당사 이사회는 금융분야 3명, 경영분야 1명, 법률분야 1명, 회계분야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2025년 12월 30일 개최된 제 10차 이사회에서 당사의 사외이사 중 법률분야 전문가인 정재욱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구성원

(가) 이사회 의장 정재욱

- 1) 상임여부 : 비상임
- 2) 직위 및 역할 :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 3) 최초선임일 : 2021년 12월 20일
- 4) 임기만료일 : 2026년 12월 31일
- 5) 주요경력
 - 2025년 09월~ : 법무법인 LKB 평산
 - 2021년 12월~ : HB저축은행 사외이사
 - 2017년 05월~ : 정재욱법률사무소

(나) 대표이사 주성범(사임)

- 1) 상임여부 : 상임
- 2) 직위 및 역할 : 대표이사
- 3) 최초선임일 : 2023년 12월 30일
- 4) 임기만료일 : 2025년 12월 30일
- 5) 주요경력
 - 2023년 12월~ : (주)HB저축은행 대표이사
 - 2022년 01월~ : 비케이자산관리대부(주) 대표이사
 - 1985년 05월~ : (주)SC제일은행 이사대우

(다) 대표이사 문규현

- 1) 상임여부 : 상임
- 2) 직위 및 역할 : 대표이사
- 3) 최초선임일 : 2025년 12월 30일
- 4) 임기만료일 : 2026년 12월 31일
- 5) 주요경력
 - 2025년 12월~ : HB저축은행 대표이사
 - 2025년 02월~ : HB저축은행 경영본부 본부장
 - 2024년 01월~ : HB저축은행 여신관리본부 본부장
 - 2023년 06월~ : HB저축은행 여신관리실 실장
 - 2017년 07월~ : 예가람저축은행 경영기획팀 부장

(라) 상근감사위원 정병각(사임)

- 1) 상임여부 : 상임
- 2) 직위 및 역할 : 상근감사위원
- 3) 최초선임일 : 2023년 08월 23일
- 4) 임기만료일 : 2025년 12월 30일

5) 주요경력

- 2023년 08월~ : (주)H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 2023년 02월~ : (주)HB저축은행 사외이사
- 2021년 01월~ : 신한저축은행 부사장
- 1989년 01월~ : 신한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마) 상근감사위원 이인걸

- 1) 상임여부 : 상임
- 2) 직위 및 역할 : 상근감사위원
- 3) 최초선임일 : 2025년 12월 30일
- 4) 임기만료일 : 2026년 12월 31일
- 5) 주요경력

- 2025년 12월~ : H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 2013년 12월~ : 페퍼저축은행 리스크/여신관리 상무대우
- 2011년 12월~ : 대신저축은행 리스크/여신관리 부서장

(바) 기타비상무이사 양은혁

- 1) 상임여부 : 비상임
- 2) 직위 및 역할 : 기타비상무이사
- 3) 최초선임일 : 2022년 12월 30일
- 4) 임기만료일 : 2026년 12월 31일
- 5) 주요경력

- 2022년 12월~ : (주)HB저축은행 기타비상무이사
- 2021년 12월~ : HB홀딩스그룹 회장
- 2013년 03월~ : 한빛자산관리대부 고문

(사) 사외이사 이상협

1) 상임여부 : 비상임

2) 직위 및 역할 : 사외이사, 보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3) 최초선임일 : 2022년 12월 30일

4) 임기만료일 : 2026년 12월 31일

5) 주요경력

- 2022년 12월~ : (주)HB저축은행 사외이사

- 2018년 12월~ : 에이블컨설팅 전무이사

- 2015년 05월~ : 원진회계법인

(아) 사외이사 이호준

1) 상임여부 : 비상임

2) 직위 및 역할 :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3) 최초선임일 : 2023년 08월 23일

4) 임기만료일 : 2026년 12월 31일

5) 주요경력

- 2023년 8월~ : (주)HB저축은행 사외이사

- 2018년 9월~ : 유일기술투자 대표이사

- 2013년 12월~ : 조은저축은행 대표이사

(자) 사외이사 박응조

1) 상임여부 : 비상임

2) 직위 및 역할 :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3) 최초선임일 : 2023년 8월 23일

4) 임기만료일 : 2026년 12월 31일

5) 주요경력

- 2023년 8월~ : (주)HB저축은행 사외이사

- 2023년 3월~ : (주)퍼시픽캐피탈 대표이사

- 2013년 04월~ : SBI저축은행 IB본부 본부장

(차) 요약_이사회 구성현황

(2025.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주요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정재욱	사외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정재욱 법률사무소	'21. 12. 20	'26. 12. 31	48 개월	임추위 보수위
문규현	상임	대표이사	HB 저축은행 경영본부 본부장	'25. 12. 30	'26. 12. 31	0 개월	-
이인결	상임	상근감사위원	페퍼저축은행 리스크/여신관리 상무대우	'25. 12. 30	'26. 12. 31	0 개월	감사위
양은혁	비상임	기타비상무이사	HB 홀딩스그룹 회장	'22. 12. 30	'26. 12. 31	36 개월	-
이상협	사외	사외이사	에이블컨설팅 전무이사	'22. 12. 30	'26. 12. 31	36 개월	보수위 위관위 감사위
이호준	사외	사외이사	유일기술투자 대표이사	'23. 08. 23	'26. 12. 31	28 개월	임추위 위관위 감사위
박응조	사외	사외이사	(주)퍼시픽캐피탈 대표이사	'23. 08. 23	'26. 12. 31	28 개월	임추위 보수위 위관위

* 임추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 : 감사위원회, 보수위 : 보수위원회, 위관위 : 위험관리위원회

(타) 요약_이사회 사임현황

(2025.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주요경력	최초 선임일	사임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주성범	상임	대표이사	비케이자산관리대부(주) 대표이사	'23. 12. 30	'25. 12. 30	24 개월	-
정병각	상임	상근감사위원	신한저축은행 부사장	'23. 08. 23	'25. 12. 30	28 개월	감사위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에 이사회는 총 10 회 개최되었으며 평균 92.9% 참석율로 운영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 된 안건은 총 86 건(의결안건 37 건, 보고안건 49 건) 이었으며 37 건의 의결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 담당 임원 또는 담당 부서장이 배석하여 안건 취지 및 의결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이사회에서 충실한 토의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2025년 제 1 차 이사회 : 2025년 01 월 22 일 (수) 13 시 45 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1 월 14 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DRC 채권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경영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2 차 이사회 : 2025년 02 월 13 일 (목) 14 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2 월 05 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분기 자금운용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4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4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2024년 하반기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2024년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정성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분기 NPL 채권 매각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2024년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업무 수행 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분기 준법감시인 내부통제활동내역	특이사항없음	-
2024년 준법감시팀 활동현황 및 2025년 활동계획	특이사항없음	-
2024년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분기 여신감리 결과	특이사항없음	-
만기경과대출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최대주주와의 후순위예금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4년 재무제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4년 영업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54년 제 3차 이사회 : 2025년 03월 12일 (화) 14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3월 04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FY2024 재무제표 보고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제 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최대주주와의 후순위예금 거래 변경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사무공간 임대차 양수도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4 차 이사회 : 2025년 04 월 10 일 (목) 14 시 30 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4 월 02 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4. 의결안건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내부통제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개인금융 정상채권 매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5 차 이사회 : 2025년 05 월 15 일 (목) 14 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5 월 07 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분기 자금운용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분기 NPL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분기 준법감시인 내부통제활동내역	특이사항없음							-
2025년 제 1 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분기 여신감리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최대주주와의 후순위예금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	----	----	----	---	----	----	----

채무조정 내부기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 및 지침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6차 이사회 : 2025년 08월 05일 (화) 14시 2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7월 28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분기 자금운용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분기 NPL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분기 준법감사인 내부통제활동내역	특이사항없음	-
2025년 제 1차 내부통제협의회 개최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제 2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분기 여신감리 결과	특이사항없음	-
정상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FY2025 수정경영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7차 이사회 : 2025년 09월 23일 (화) 09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9월 17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4. 의결안건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무담보 NPL 담보대출 세부운영기준 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8차 이사회 : 2025년 10월 21일 (화) 09시 2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0월 13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렌터카사업자대출 상품 론칭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FY2025 수정경영계획(SG&A)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9차 이사회 : 2025년 11월 18일 (화) 09시 2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1월 10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분기 자금운용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분기 NPL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분기 준법감시인 내부통제활동내역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분기 여신감리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제 1 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거래기본약정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10 차 이사회 : 2025년 12월 30일 (화) 09시 45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2월 22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문규현	이인걸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문규현	이인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FY2026 이사회 및 위원회 연간일정	특이사항없음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특이사항없음	-
자금세탁방지업무 독립적 감사 실시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이사회 의장 선임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대표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가결
이사의 개별 보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기권	가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서임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FY2026 경영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최대주주와의 후순위예금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업무한도 담보 변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DRC 채권 매입정책 기한 연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퇴직임원 특별위로금 지급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평가

(1) 이사회 평가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 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수준, 이사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 수준, 이사회 개최 주기 및 시기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부의 안건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의 실질성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이사회이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이사의 서면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에서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합니다.

2023년에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이사회의 구성·운영 실태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당행의 주요의사 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1년간의 활동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사외이사 자기평가, 이사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검은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합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2월 30일 개최된 제 10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중 법률분야 전문가인 정재욱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 (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 8 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관련법령 및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후보를 추천하며 관련사항을 심의·의결 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압축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임원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 회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나.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 2 조 제 1 항) 및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6 조 제 3, 4 항)

2025년 12월말 현재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사외이사 1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전문가인 이상협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금융전문가 박응조 사외이사와 법률전문가 정재욱 사외이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 구성원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현황

(2025.12.31 일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호준	사외	위원장	'25.12.30	'26.12.31
박응조	사외	위원	'25.12.30	'26.12.31
정재욱	사외	위원	'25.12.30	'26.12.31

(나) 사임현황

(2025.12.31 일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사임일
-	-	-	-	-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서 자격요건과 회사의 비전, 성장방향, 준법 경영 의지 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관련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이사의 자격요건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제 2 항)

-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사람 또는 있었던 사람)
-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사람 또는 있었던 사람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에 종사한 사람
- 기타 상기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

-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 투자업 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통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되 이사의 법정 수를 미충족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궐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 비전, 공익성 및 건전경영,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측면과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회 개최되었으며 100% 참석율로 운영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 된 안건은 총 3건(의결안건 3건)이었으며 3건의 의결안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개최된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로 문규현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며 사외이사 후보로 정재욱 후보자, 이상협 후보자, 이호준 후보자, 박응조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자 중 이상협 후보자, 이호준 후보자와 이인걸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자들은 2025년 12월 30일 제 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문규현 대표이사 후보자는 동일일에 개최된 2025년 제 10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2025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년 11월 18일 (화) 10시

[안건통지일 : 2025년 11월 1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정재욱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정재욱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3 조 제 1 항)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으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독립성, 역할·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이사의 서면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에서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는 “적정”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문규현 (선임)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문규현

2) 출생연도 : 1975년

3) 출신학교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4) 경력

- 2025년 02월~현재 : (現)HB저축은행 경영본부 본부장

- 2024년 01월~2025년 02월 : (前)HB저축은행 여신관리본부 본부장

- 2023년 06월~2023년 12월 : (前)HB저축은행 여신관리실 실장

- 2017년 07월~2023년 05월 : (前)에가람저축은행 경영기획팀 부장

(나) 후보 제안자 인적사항

1) 성명 : 이호준

2) 경력

- 2023년 08월~현재 : (現)HB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2018년 09월~현재 : (現)유일기술투자 대표이사

- 2018년 03월~2018년 09월 : (前)유일피이투자 대표이사

- 2013년 12월~2018년 03월 : (前)조은저축은행 대표이사

3) 후보자와의 관계

문규현 후보자와 후보제안자 이호준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 이유

문규현 후보자는 20여년 이상 저축은행에 근무하며 여신영업, 사후관리 및 경영 총괄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전반의 경영에 대한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회사의 균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로 판단됨에 따라 HB저축은행의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 경로

문규현 후보자는 후보제안자 이호준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2025년 11월 18일 개최된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참석위원 3명 모두의 찬성으로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되었고 2025년 12월 30일 제 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동일자에 개최된 2025년 12월 30일 제 10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령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법령상 자격요건 심사 완료

가)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나) 평가 : 후보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적극적 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조 및 제 41 조에서 이사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문규현 후보자는 금융업 근무 경력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 혁신 및 효율화, 기존 비즈니스의 확장 및 신규 사업 진출 등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전문성 : 문규현 후보자는 금융업에 20년 이상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문규현 후보자는 당사와 이해 관계가 없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윤리성·책임성 : 문규현 후보자는 회사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충실성 : 문규현 후보자는 현재 당사 외 겸직 사항이 없으므로 당사의 사내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본인 소명

본인은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대표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HB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 등 전반적인 저축은행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5년 11월 18일 개최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문규현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정하고 있는 적극적 자격요건에 적합한 후보자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 후 출석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 대표집행임원 후보

2025년도 해당사항 없음

(3)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이인걸 (선임)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이인걸
- 2) 출생연도 : 1967년
- 3) 출신학교
 - 건국대학교 대학원 공법학 법학석사
- 4) 경력
 - 2013년 12월~2025년 10월 : (前)페퍼저축은행 리스크/여신관리 상무대우
 - 2011년 12월~2013년 12월 : (前)대신저축은행 리스크/여신관리 부서장
 - 2003년 11월~2011년 12월 : (前)SC캐피탈 리스크/여신관리 이사

(나) 후보 제안자 인적사항

- 1) 성명 : 이호준
- 2) 경력
 - 2023년 08월~현재 : (現)HB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2018년 09월~현재 : (現)유일기술투자 대표이사
 - 2018년 03월~2018년 09월 : (前)유일피이투자 대표이사
 - 2013년 12월~2018년 03월 : (前)조은저축은행 대표이사

3) 후보자와의 관계

이인걸 후보자와 후보제안자 이호준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 이유

이인걸 후보자는 약 30년간 금융업에서 근무하여 해당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리스크 및 여신관리 업무 수행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효율적인 내부통제 및 감독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HB저축은행의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이인걸 후보자는 후보제안자 이상협 사외이사의 추천을 받아 2025년 11월 18일 개최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참석위원 3명 모두의 찬성으로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령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법령상 자격요건 심사 완료

가)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나) 평가 : 후보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적극적 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 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인걸 후보자는 금융업 근무 경력을 통해 쌓은 리스크/여신관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써 원활한 내부통제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가. 전문성 : 이인걸 후보자는 금융업에 약 30년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이인걸 후보자는 당사와 이해 관계가 없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윤리성·책임성 : 이인걸 후보자는 회사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충실성 : 이인걸 후보자는 현재 당사 외 겸직 사항이 없으므로 당사의 사내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본인 소명

본인은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임원 및 감사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없음을 확인하며, HB저축은행의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써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인 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5년 11월 18일 이인걸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정하고 있는 적극적 자격요건에 적합한 후보자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출석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이상협 (연임)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이상협
- 2) 출생연도 : 1968년
- 3) 출신학교
 - 경북대학교 회계학과
- 4) 경력
 - 2023년 08월~현재 : (現)HB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 2018년 12월~현재 : (現)에이블컨설팅 전무
 - 2015년 05월~2018년 11월 : (前)원진회계법인 전무

5) 사외이사 경력

이상협 후보자는 2022년 12월 HB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선임되어 재임 중이며, 2025년 개최한 이사회 총 10회 중 10회(참석율 100%), 보수위원회 총 1회 중 1회(참석율 100%), 감사위원회 총 12회 중 12회(참석율 100%), 위험관리위원회 총 14회 중 14회(참석율 100%) 참석하였습니다.

(나) 후보 제안자 인적사항

- 1) 성명 : 이호준
- 2) 경력
 - 2023년 08월~현재 : (現)HB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2018년 09월~현재 : (現)유일기술투자 대표이사
 - 2018년 03월~2018년 09월 : (前)유일피투자 대표이사
 - 2013년 12월~2018년 03월 : (前)조은저축은행 대표이사

3) 후보자와의 관계

이상협 후보자와 후보제안자 이호준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 이유

이상협 후보자는 주권상장법인에서 세무, 회계 관련 업무 담당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회계 전문가로서 당사의 균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이상협 후보자는 후보제안자 이호준 사외이사의 추천을 받아 2025년 11월 18일 개최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참석위원 3명 모두의 찬성으로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 등과의 관계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령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법령상 자격요건 심사 완료

가)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나) 평가 : 후보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제8조, 제20조 및 정관 제27조의 3에서 임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는 전문경영인,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및 상기 조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변호사, 회계사, 공인감사인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업계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법학 또는 상경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상기 조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상협 후보자는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CFO 직위에 있었던 바, 회계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 여부

가. 전문성 : 이상협 후보자는 세무, 회계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근무경력이 있는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이상협 후보자는 당사와 이해 관계가 없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윤리성·책임성 : 이상협 후보자는 회사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충실성 : 이상협 후보자는 현재 (주)에이블컨설팅의 전무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본인은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없음을 확인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5년 11월 18일 이상협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정하고 있는 적극적 자격요건에 적합한 후보자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출석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5)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이호준 (연임)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이호준

2) 출생연도 : 1964년

3) 출신학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4) 경력

- 2023년 08월~현재 : (現)HB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2018년 09월~현재 : (現)유일기술투자 대표이사

- 2018년 03월~2018년 09월 : (前)유일피이투자 대표이사

- 2013년 12월~2018년 03월 : (前)조은저축은행 대표이사

5) 사외이사 경력

이호준 후보자는 2023년 08월 HB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선임되어 재임 중이며, 2025년 개최한 이사회 총 10회 중 10회(참석율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1회 중 1회(참석율 100%), 감사위원회 총 12회 중 12회(참석율 100%), 위험관리위원회 총 14회 중 14회(참석율 100%) 참석하였습니다.

(나) 후보 제안자 인적사항

1) 성명 : 이상협

2) 경력

- 2023년 08월~현재 : (現)HB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 2018년 12월~현재 : (現)에이블컨설팅 전무

- 2015년 05월~2018년 11월 : (前)원진회계법인 전무

3) 후보자와의 관계

이호준 후보자와 후보 제안자 이상협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 이유

이호준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당사의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더 해줄 책임자로 판단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이호준 후보자는 후보 제안자 이상협 사외이사의 추천을 받아 2025년 11월 18일 개최된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참석위원 3명 중 당사자인 본인을 제외한 2명의 찬성으로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령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법령상 자격요건 심사 완료

가)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나) 평가 : 후보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제8조,제20조 및 정관 제27조의 3에서 임원,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는 전문경영인,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및 상기 조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변호사, 회계사, 공인감사인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업계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법학 또는 상경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기관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상기 조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호준 후보자는 금융업 관련 분야의 CEO 직위에 있으며, 내부통제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 여부

가. 전문성 : 이호준 후보자는 금융업 CEO 경력이 있는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이호준 후보자는 당사와 이해 관계가 없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윤리성·책임성 : 이호준 후보자는 회사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충실성 : 이호준 후보자는 현재 (주)유일기술투자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본인은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없음을 확인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인 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5년 11월 18일 이호준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정하고 있는 적극적 자격요건에 적합한 후보자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출석위원 3명 중 당사자인 본인을 제외한 2명의 찬성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6) 사외이사 후보 정재욱 (연임)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정재욱

2) 출생연도 : 1969년

3) 출신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4) 경력

- 2021년 12월~현재 : (現) HB저축은행 사외이사

- 2025년 09월~현재 : (現) 법무법인 LKB 평산

- 2018년 07월~2025년 08월 : (前) 정재욱법률사무소

- 2017년 05월~2018년 06월 : (前) 법무법인 경림

- 2000년 02월~2014년 10월 : (前) 대검찰청 검사

5) 사외이사 경력

정재욱 후보자는 2021년 12월 HB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재임 중이며, 2025년 개최한 이사회 총 10회 중 10회(참석율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1회 중 1회(참석율 100%), 보수위원회 총 1회 중 1회(참석율 100%) 참석하였습니다.

(나) 후보 제안자 인적사항

1) 성명 : 이상협

2) 경력

- 2023년 08월~현재 : (現)HB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 2018년 12월~현재 : (現)에이블컨설팅 전무

- 2015년 05월~2018년 11월 : (前)원진회계법인 전무

3) 후보자와의 관계

정재욱 후보자와 후보 제안자 이상협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 이유

정재욱 후보자는 검사 및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로서 당사의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더해줄 책임자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정재욱 후보자는 후보 제안자 이상협 사외이사의 추천을 받아 2025년 11월 18일 개최된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참석위원 3명 중 당사자인 본인을 제외한 2명의 찬성으로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령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법령상 자격요건 심사 완료

가)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나) 평가 : 후보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및 제8조 및 정관 제27조의 3에서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는 전문경영인,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및 상기 조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재욱 후보자는 검사 및 변호사 전문자격을 소지하였으며, 관련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이므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 여부

가. 전문성 : 정재욱 후보자는 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법률 분야에서 오랜 근무경력이 있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정재욱 후보자는 당사와 이해 관계가 없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윤리성·책임성 : 정재욱 후보자는 회사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충실성 : 정재욱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LKB 평산 소속 변호사이거나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본인은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없음을 확인하며, 사외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인 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5년 11월 18일 정재욱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정하고 있는 적극적 자격요건에 적합한 후보자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출석위원 3명 중 당사자인 본인을 제외한 2명의 찬성으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7) 사외이사 후보 박응조 (연임)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박응조

2) 출생연도 : 1974년

3) 출신학교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4) 경력

- 2023년 08월~현재 : (現) HB저축은행 사외이사

- 2023년 03월~현재 : (現) 퍼시픽캐피탈 대표이사

- 2013년 04월~2023년 02월 : (前) SBI저축은행 IB본부 본부장

5) 사외이사 경력

박응조 후보자는 2023년 08월 HB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재임 중이며, 2025년 개최한 이사회 총 10회 중 10회(참석율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1회 중 1회(참석율 100%), 보수위원회 총 1회 중 1회(참석율 100%), 위험관리위원회 총 14회 중 13회(참석율 92.9%) 참석하였습니다.

(나) 후보 제안자 인적사항

1) 성명 : 정재욱

2) 경력

- 2021년 12월~현재 : (現) HB저축은행 사외이사

- 2025년 09월~현재 : (現) 법무법인 LKB 평산

- 2018년 07월~2025년 08월 : (前) 정재욱법률사무소

- 2017년 05월~2018년 06월 : (前) 법무법인 경림

- 2000년 02월~2014년 10월 : (前) 대검찰청 검사

3) 후보자와의 관계

박응조 후보자와 후보 제안자 정재욱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 이유

박응조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회계 전문가이며, 금융 및 경영 관련 분야의 오랜 경력을 통해 지배구조 및 회사 전반의 경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금융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더해줄 책임자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박응조 후보자는 후보 제안자 정재욱 사외이사의 추천을 받아 2025년 11월 18일 개최된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참석위원 3명 중 당사자인 본인을 제외한 2명의 찬성으로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령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 요건)	충족	법령상 자격요건 심사 완료

가)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
 나) 평가 : 후보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및 제8조 및 정관 제27조의 3에서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는 전문경영인,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및 상기 조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박응조 후보자는 금융업 관련 분야의 CEO 직위에 있으며,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 여부

가. 전문성 : 박응조 후보자는 금융업 CEO 경력이 있는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 박응조 후보자는 당사와 이해 관계가 없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윤리성·책임성 : 박응조 후보자는 회사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충실성 : 박응조 후보자는 현재 (주)퍼시픽캐피탈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당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본인은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없음을 확인하며, 사외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인 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5년 11월 18일 박응조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정하고 있는 적극적 자격요건에 적합한 후보자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출석위원 3명 중 본인을 제외한 2명의 찬성으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8)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당사는 2025년 12월 30일 개최된 제 1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가 연임되었으며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 등 출석율	평가 여부
정재욱	'21.12.20~	연임	100%	적합
이상협	'22.12.30~	연임	100%	적합
이호준	'23.08.23~	연임	100%	적합
박응조	'23.08.23~	연임	96%	적합

(9)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결원이 예정될 경우 주주사, 경영진, 외부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10)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 관련 보고한 내용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결원이 예정될 경우 주주사, 경영진, 외부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11)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결원이 예정될 경우 주주사, 경영진, 외부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12)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2025년도 해당사항 없음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 2025년 제 1 차 이사회 : 2025년 01월 22일 (수) 13시 45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1월 14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DRC 채권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경영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5년 제 2 차 이사회 : 2025년 02월 13일 (목) 14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2월 05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분기 자금운용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4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4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2024년 하반기 내부감사협업체 점검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2024년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정성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분기 NPL 채권 매각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2024년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업무 수행 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분기 준법감시인 내부통제활동내역	특이사항없음	-
2024년 준법감시팀 활동현황 및 2025년 활동계획	특이사항없음	-
2024년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분기 여신감리 결과	특이사항없음	-
반기경과대출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최대주주와의 후순위예금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4년 재무제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4년 영업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54년 제3차 이사회 : 2025년 03월 12일 (화) 14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3월 04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FY2024 재무제표 보고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제 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최대주주와의 후순위예금 거래 변경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사무공간 임대차 양수도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4 차 이사회 : 2025년 04 월 10 일 (목) 14 시 30 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4 월 02 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4. 의결안건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내부통제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개인금융 정상채권 매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5 차 이사회 : 2025년 05 월 15 일 (목) 14 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5 월 07 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1 분기 경영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 분기 자금운용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 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 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 분기 NPL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 분기 준법감시인 내부통제활동내역	특이사항없음							-
2025년 제 1 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 분기 여신감리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최대주주와의 후순위예금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채무조정 내부기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 및 지침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6차 이사회 : 2025년 08월 05일 (화) 14시 2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7월 28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분기 자금운용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분기 NPL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분기 준법감사인 내부통제활동내역	특이사항없음	-
2025년 제 1차 내부통제협의회 개최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제 2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분기 여신감리 결과	특이사항없음	-
정상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FY2025 수정경영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7차 이사회 : 2025년 09월 23일 (화) 09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9월 17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무담보 NPL 담보대출 세부운영기준 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8차 이사회 : 2025년 10월 21일 (화) 09시 2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0월 13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렌터카사업자대출 상품 론칭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FY2025 수정경영계획(SG&A)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9차 이사회 : 2025년 11월 18일 (화) 09시 2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1월 10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주성범	정병각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분기 자금운용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분기 NPL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분기 준법감시인 내부통제활동내역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분기 여신감리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제 1 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거래기본약정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10 차 이사회 : 2025년 12월 30일 (화) 09시 45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2월 22일]

항 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문규현	이인걸	
1. 이사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양은혁	문규현	이인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FY2026 이사회 및 위원회 연간일정	특이사항없음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특이사항없음							-
자금세탁방지업무 독립적 감사 실시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이사회 의장 선임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대표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찬성	가결
이사의 개별 보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권	기권	가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찬성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찬성	기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FY2026 경영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최대주주와의 후순위예금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업무한도 담보 변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DRC 채권 매입정책 기한 연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퇴직임원 특별위로금 지급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년 11월 18일 (화) 10시

[안건통지일 : 2025년 11월 1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정재욱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정재욱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감사위원회

- 2025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1월 22일 (수) 14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1월 1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4년 부서감사 및 명령휴가제 수행 보고의 건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4년 4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안건				
24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수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4년 하반기 내부감사협의회 점검 수행의 건 (금융사고 보고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2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2월 13일 (화) 15시 26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2월 0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평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동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안건				
2025년 1분기 부실채권 책임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3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3월 12일 (수) 14시 28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3월 0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 55기 결산 감사 보고	특이사항없음			-
건전경영 및 이행상충 방지계획 이행실적 및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	-	-	-	-
5. 심의안건				
2025년 03월 부실채권 책임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4 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4 월 10 일 (목) 13 시 55 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4 월 03 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3년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조치요구사항 정리 보고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내부통제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안건				
-	-	-	-	-

- 2025년 제 5 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5 월 15 일 (목) 13 시 30 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5 월 07 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25년 1 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안건				
25년 2 분기 부실채권 책임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6 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6월 11일 (수) 14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6월 0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24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안건				
25년 06월 부실채권 책임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7 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7월 29일 (화) 14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7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5년 상반기 내부감사 수행의 건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5년 2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안건				
25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 수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5년 상반기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수행의 건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재화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8 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8월 05일 (화) 14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7월 3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	-	-	-
5. 심의안건				
25년 3분기 부실채권 책임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9 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9월 12일 (금) 15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9월 0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	-	-	-
5. 심의안건				
25년 상반기 IT 부문 내부감사협의회 점검 수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4년 제 10차 감사위원회 : 2024년 08월 19일 (화) 14시 50분

[안건통지일 : 2024년 08월 1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IT 외부감사 계획 보고의 건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5년 3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	-	-	-
5. 심의안건				
-	-	-	-	-

- 2025년 제 11차 감사위원회 : 2025년 11월 18일 (목) 10시 4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1월 1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	-	-	-	-
5. 심의안건				
25년 4분기 부실채권 책임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금세탁방지업무 독립적 감사실시 결과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12차 감사위원회 : 2025년 12월 30일 (화) 10시 4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2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이인걸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이인걸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외부감사인 연간감사계획 보고	특이사항없음			-
25년 하반기 내부감사 수행결과보고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6년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동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안건				
25년 하반기 내부감사협의회 점검 수행의 건 (영업한도 준수현황/PF 대출 관리의 적정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제 1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1월 17일 (금) 14시 15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1월 1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4년 4Q 대손상각실적 및 회수 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Q NPL 채권 매각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	-	-	-	-

- 2025년 제 2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2월 10일 (월) 서면

[안건통지일 : 2025년 02월 0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2025년 1Q 무담보연체(개인)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5년 1Q 채무재조정(개인)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3월 05일 (수) 서면

[안건통지일 : 2025년 03월 0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NPL(기업)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4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3월 21일 (금) 서면

[안건통지일 : 2025년 03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NPL(기업) 여신 매입 및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5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4월 30일 (수) 서면

[안건통지일 : 2025년 04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4년 4Q 리스크관리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Q 대손상각 및 회수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Q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	-	-	-	-

- 2025년 제 6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5월 15일 (목) 15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5월 0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1Q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2Q 무담보연체(개인)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5년 2Q 채무재조정(개인)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7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5월 23일 (금) 서면

[안건통지일 : 2025년 05월 2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2025년 2Q NPL(기업)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예상에 따른 승인 요청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8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6월 13일 (금) 서면

[안건통지일 : 2025년 06월 1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1Q 리스크관리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2Q NPL(기업)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예상에 따른 승인 요청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9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8월 05일 (화) 15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8월 0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2Q 대손상각 및 회수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Q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3Q NPL(기업)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5년 3Q NPL(개인)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10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9월 12일 (금) 14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9월 1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불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2Q 리스크관리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3Q NPL(기업)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	찬성	가결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예상에 따른 승인 요청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 2025년 제 11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10월 21일 (화) 09시 4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0월 1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증권 집합투자증권 세부운영기준 제정의 건	반대	반대	반대	부결
자동차대여사업자대출 상품 취급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유가증권 본부별 투자한도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12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11월 07일 (금) 13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1월 0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PF 대출 조건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 2025년 제 1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11월 18일 (화) 10시 2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1월 1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3Q 대손상각 및 회수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Q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4Q NPL(기업)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5년 4Q NPL(개인)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에 따른 승인 요청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14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12월 04일 (목) 09시

[안건통지일 : 2025년 12월 0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3Q 리스크관리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위기상황분석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6년 운용 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6년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6년 총당금 적립기준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보수위원회

- 2025년 제 1 차 보수위원회 : 2025년 02월 13일 (목) 15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2월 0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2024년 보수체계연차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정재욱

정재욱 사외이사는 2025년 재임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보수위원회 1회, 총 12회 모두 참석 하였습니다. 법률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정재욱 사외이사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11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이상협

이상협 사외이사는 2025년 재임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감사위원회 12회, 위험관리위원회 14회, 보수위원회 1회, 총 37회 참석 하였습니다. 회계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상협 사외이사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23.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이호준

이상협 사외이사는 2025년 재임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감사위원회 12회, 위험관리위원회 14회, 총 37회 참석 하였습니다. 금융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호준 사외이사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23.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박응조

박응조 사외이사는 2025년 재임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 10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위험관리위원회 14회 중 13회, 보수위원회 1회, 총 25회 참석 하였습니다. 금융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정된 안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박응조 사외이사는 당사의 이사로서 안전검토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025년 중 총 17.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 요약 (개최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 중 개최된 횟수를 기준으로 함)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시간 (참석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실적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정재욱	10	10	1	1	-	-	-	-	1	1	11 시간 (100%)
이상협	10	10	-	-	12	12	14	14	1	1	23.5 시간 (100%)
이호준	10	10	1	1	12	12	14	14	-	-	23.5 시간 (100%)
박응조	10	10	1	1	-	-	14	13	1	1	17.5 시간 (96%)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전별 찬성여부 내역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상세활동내역 참조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1) 보험사 : 현대해상
- (2) 보험기간 : 2025.04.06 ~ 2026.04.06
- (3) 보상한도 : 3,000,000,000원
- (4) 보험료 : 16,923,000원
- (5) 자기부담금 : 없음
- (6) 보장내용 :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부당행위 : 직무상의 의무 위반, 과실 및 기타 행위 등)
- (7) 보상범위
 - 가) 보통 약관상의 담보범위
 - 소송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 화해 또는 합의시 합의 비용
 -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반 비용(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 형사방어비용(무죄한정) / 단, 형사소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는 제외

나) 주요 특별약관

- 주주대표소송담보 특별약관 :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경영권의 남용 및 경영상의 과실로 회사의 불이익을 끼친 경영진(임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
- 대주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담보 : 주식 총수의 일정지분이상(통상 15%이상) 소유한 대주주
- 피보험자간 상호 손해배상청구 부담보 : 임원이 타 임원을 상대로 제기, 회사가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청구소송
- 외감법 과징금 특약으로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여 특약으로 담보 : (고의는 부담보) 통상 5억~ 20억 이내에서 선택
- 정부관련기관 손해배상 청구 부담보
- 전문직업위험 부담보
-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 부담보 : 해당 배상책임은 퇴직금의 운영을 책임지는 수탁자의 배상책임
- 증권거래법 위반 부담보
- 소급일자 이전 해위 보장제외 특별약관
- 특허권, 저작권 보장제외 특별약관
- 기업공개위험 부담보

다) 보상제외

-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하는 기망행위
- 고의적인 법률 위반행위
- 의도적인 법률 위반행위
- 신체 및 재산손해
- 이전행위 : 이전 증권 또는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고
- 형사처벌의 결과로 판결된 벌금, 과태료
- 환경오염으로 기인한 손해배상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2025년 이사회 구성원의 교육·연수는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비대면 교육명은 [핵심만 쏙쏙, 자금세탁방지 Q&A (6H)] 이며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구성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충분한 과정이며 2025년 05월에 실시하여 구성원 전원 수료 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외부 교육기관 교육을 확대하여 대상자들의 전문성 확보 및 외부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외이사 성명	정재욱	이상협	이호준	박응조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교육연수 일자 및 내용	일자 : 2025.05.01 ~ 2025.05.31 내용 : 핵심만 쏙쏙, 자금세탁방지 Q&A			
사외이사별 수료 여부	수료	수료	수료	수료
4. 의결안건	6 시간	6 시간	6 시간	6 시간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정재욱

(가) 소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합니다. 정재욱 사외이사는 상기 법령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으며 2025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소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전문경영인, 정규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있습니다. 정재욱 사외이사는 법률 종사자에 해당하며 기타 직무공정성, 윤리성과 책임성, 충실성 요건도 충족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 경제 및 금융분야에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관계자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사외이사 이상협

(가) 소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상협 사외이사는 상기 법령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으며 2025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소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전문경영인, 정규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있습니다. 이상협 사외이사는 회계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며 기타 직무공정성, 윤리성과 책임성, 충실성 요건도 충족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 경제 및 금융분야에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관계자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3) 사외이사 이호준

(가) 소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합니다. 이호준 사외이사는 상기 법령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으며 2025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소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전문경영인, 정규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있습니다. 이호준 사외이사는 금융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며 기타 직무공정성, 윤리성과 책임성, 충실성 요건도 충족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 경제 및 금융분야에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관계자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4) 사외이사 박응조

(가) 소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합니다. 박응조 사외이사는 상기 법령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였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전문경영인, 정규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있습니다. 박응조 사외이사는 금융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며 기타 직무공정성, 윤리성과 책임성, 충실성 요건도 충족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 경제 및 금융분야에 충분한 역량 및 전문성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관계자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2025 년도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되 최대 6년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극적 요건 및 연간 활동 내역을 기초로 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1) 평가주체

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연간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평가기준 및 절차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은 금융, 경영·경제, 회계·재무 및 법률 등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적 역량,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성·윤리적 역량, 사외이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할애가 가능하지 여부를 판단하는 성실성 역량 항목에 대하여 사외이사 개별 자기평가 및 이사회평가, 지원부서평가, 활동내역평가를 통해 산출된 평가 점수와 이사회 및 이사회 내위원회 참여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이사회 담당 부서에서 최종 집계합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당사는 2025년 12월말 재임 중인 사외이사 4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사외이사 4명 모두 소극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적극적 요건 항목에서도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명	평가결과		개선방안
	소극적 요건	2025년 이사회 등 참석율	
정재욱	충족	100.0%	-
이상협	충족	100.0%	-
이호준	충족	100.0%	-
박응조	충족	96.0%	-

* 상기 사외이사 평가 중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율은 사외이사별 2024년 내 재임기간 중 개최된 회의의 참석율을 평가함

3) 외부평가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당사는 사외이사인 정재욱 이사를 이사회장으로 선임함에 따라 별도로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 활동내역

(가) 지원부서 : 경영관리팀

(나) 조직구성 : 팀장 1명, 팀원 2명

- 담당자 : 김기수 팀장(02-6312-6530), 최수지 주임(02-6312-6579)

(다) 활동내역

- 1) 이사회 자료 수집 및 작성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 2) 이사회 일정 전달 안내
- 3) 이사회 진행 지원
- 4) 이사회 의사록 관리
- 5) 사외이사 회의 진행 지원 등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정재욱 사외이사

(가) 재직기간 : 2021년 12월 20일 ~ 2025년 12월 31일

(나) 보수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백만원	-
기본금	36.0 백만원	월 3.0 백만원
상여금	-	-
기타수당	1.2 백만원	이사회 등 참여수당(6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 동일한 일자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중복 개최 시 참여수당 1회만 지급 / 비대면 참여 시 참여수당 미지급

(2) 이상협 사외이사

(가) 재직기간 : 2022년 12월 30일 ~ 2025년 12월 31일

(나) 보수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백만원	-
기본금	36.0 백만원	월 3.0 백만원
상여금	-	-
기타수당	3.2 백만원	이사회 등 참여수당(16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 동일한 일자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중복 개최 시 참여수당 1회만 지급 / 비대면 참여 시 참여수당 미지급

(3) 이호준 사외이사

(가) 재직기간 : 2023년 08월 23일 ~ 2025년 12월 31일

(나) 보수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백만원	-
기본금	36.0 백만원	월 3.0 백만원
상여금	-	-
기타수당	3.0 백만원	이사회 등 참여수당(15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 동일한 일자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중복 개최 시 참여수당 1회만 지급 / 비대면 참여 시 참여수당 미지급

(4) 박응조 사외이사

(가) 재직기간 : 2023년 08월 23일 ~ 2025년 12월 31일

(나) 보수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백만원	-
기본금	36.0 백만원	월 3.0 백만원
상여금	-	-
기타수당	2.0 백만원	이사회 등 참여수당(10 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 동일한 일자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중복 개최 시 참여수당 1 회만 지급 / 비대면 참여 시 참여수당 미지급

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2025년에는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이호준	'23.08	'26.12	28 개월	임추위 / 위관위 / 감사위	임추위 위원장 위관위 위원장	유일기술투자 대표이사 조은저축은행 대표이사
박응조	'23.08	'26.12	28 개월	임추위 / 보수위 / 위관위	-	퍼시픽캐피탈 대표이사 SBI 저축은행 IB 본부장
이상협	'22.12	'26.12	36 개월	보수위 / 감사위 / 위관위	감사위 위원장 보수위 위원장	주식회사 에이블컨설팅 전무 원진회계법인 전무
정재욱	'21.12	'26.12	48개월	임추위 / 보수위	이사회 의장	법무법인 LKB평산 정재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정익	'20.12	'23.12	36개월	임추위 / 위관위	위관위 위원장	법무법인 탐 변호사 수원지법 외 판사
정병각	'23.02	'23.08	6개월	임추위 / 위관위 / 감사위	임추위 위원장	신한저축은행 부사장 신한은행 인천본부 본부장
유인근	'21.12	'23.02	14개월	감사위	감사위 위원장	현대회계법인 이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안용재	'21.12	'22.12	12개월	임추위 / 위관위	임추위 위원장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귀찬	'20.03	'20.07	4개월	-	-	김귀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정열	'20.07	'20.12	4개월	-	-	법무법인 율촌 대전지법 외 부장판사

*임추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 감사위원회, 보수위: 보수위원회, 위관위: 위험관리위원회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 08월 0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2년 01월 27일 개최된 제3차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 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계획 수립 등 입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1조에 따라 최고경영자로 선출되는 사람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는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임원자격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이사회가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시됩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사회는 빠른 시간 이내로 최고경영자 후보를 심의·확정하여 최종후보자가 이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하며, 후보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을 부의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완료합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운영규정 및 직제규정에서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하며, 최고경영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사회는 지체 없이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대표이사 후보 문규현

(가) 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	------	------

1) 소극적요건

가. 법령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법령상 자격요건 심사 완료
---------------------	----	----------------

1)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평가 : 문규현 대표이사 후보자는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한 임원의 자격 요건 및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제41조 등에서 명시한 최고경영자의 자격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및 제41조에서 임원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를 두루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문규현 후보자는 금융업 근무 경력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 혁신 및 효율화, 기존 비즈니스의 확장 및 신규 사업 진출 등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대표이사 후보 문규현

2025년 11월 18일 개최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호준 사외이사(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후보자 자격 요건에 대한 심층 검증을 거쳐 위원 3명 전원 찬성으로 문규현 후보자를 최종 대표이사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로 신규 선임 되었으며, 동일 개최된 제10차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최고경영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25.11.18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5.12.30	사내이사(등기임원) 선임	제 1 차 임시주주총회
2025.12.30	대표이사 선임	제 10 차 이사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사유발생시 주주사, 경영진, 외부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2022년 01월 27일 개최된 제3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내용이 포함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였고, 2025년 최고 경영자 선임 시 동 규범의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가) 지원부서 : 경영관리팀

(나) 조직구성 : 팀장 1명, 팀원 2명

- 담당자 : 김기수 팀장(02-6312-6530), 최수지 주임(02-6312-6579)

(다) 운영현황

- 1) 주주총회 진행 지원
- 2) 임원선임 보고
- 3) 사업자등록증 변경 및 법인등기 변경 등
- 4) 기타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업무 지원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및 의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제5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 뿐만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전문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을 변경하여 내부통제위원회 역할을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의사 결정하였으며, 기존 운영하던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협의체로 변경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존 감사위원회 역할 및 의무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2회의 회의가 개최되어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1)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해당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5년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상근감사위원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보고사항 제외, 이사회 37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건, 보수위원회 2건, 위험관리위원회 22건)에 대해 모두 사전심의를 거쳤습니다.

2)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상법 제412조 및 제402조, 지배구조법 제20조 제4항)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외감법 제10조)

2023년 12월 28일에 개최된 제 14차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태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이후 타 회계법인으로 변경한 이력은 없습니다.

(다)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팀장 위임 관련 사항

HB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팀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주요사항(부책심의, 내부감사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제출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세밀히 검토합니다.

2025년 03월 12일 개최된 제3차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25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2025년 02월 13일에 개최된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해 관련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 내부통제의 기본 방침 및 전략 수립

내부통제부서가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내부통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2024년 내부통제 활동내역 및 2025년 내부통제 활동계획을 보고 하였습니다.

(바)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증시하는 조직 문화 정착 방안 마련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 준법서약서 날인, 윤리강령 배포, 준법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 및 교육완료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2024년 윤리강령 실천방안 준수 점검 결과 및 2024년 전 임직원 대상 상반기 윤리강령 교육, 하반기 컴플라이언스 교육 완료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사)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또는 개정 시,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감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및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2025년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하였으며 지적 사항 등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2025년 제4차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아) 내부통제기준(규정)제정 및 개정

내부통제기준(규정) 제정 또는 개정 시,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감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및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2025년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내부통제기준(규정) 개정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하였으며 지적 사항 등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2025년 제4차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자)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보고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조치 요구

당사는 2025년 12월말 현재 책무구조도 미제출하여 해당 건에 대해 점검·평가는 미진행하였습니다.

(차) 기타

HB 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팀으로부터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분기별 총 4 차례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회사 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여 그 내용을 포괄하는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감사위원회규정 제8조 제1항) 및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합니다.(지배구조법 제16조 제3,4항) 또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항)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합니다. (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

2025년 12월 말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전문가인 이상협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금융 전문가인 이호준 사외이사와 금융, 내부통제 및 감사 전문가인 이인걸 상근감사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가) 감사위원회 구성현황

(2025.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상협	사외	위원장	'25.12.30	'26.12.31
이호준	사외	위원	'25.12.30	'26.12.31
이인걸	상임	위원	'25.12.30	'26.12.31

(나) 사임현황

(2025.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사임일
정병각	상임	위원	'24.12.19	'25.12.3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개요

2025년에 감사위원회는 총 12회 개최되었으며 100% 참석율로 운영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36건(보고안건 8건, 의결안건 13건, 심의안건 13건) 이었으며 8건의 의결안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2025년 제 1 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1월 22일 (수) 14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1월 1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4년 부서감사 및 명령휴가제 수행 보고의 건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4년 4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안건				
24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수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4년 하반기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수행의 건 (금융사고 보고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2 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2월 13일 (화) 15시 26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2월 0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평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동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안건				
2025년 1분기 부실채권 책임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3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3월 12일 (수) 14시 28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3월 0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 55기 결산 감사 보고	특이사항없음			-
건전경영 및 이행상충 방지계획 이행실적 및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	-	-	-	-
5. 심의안건				
2025년 03월 부실채권 책임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4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4월 10일 (목) 13시 55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4월 0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3년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조치요구사항 정리 보고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내부통제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안건				
-	-	-	-	-

- 2025년 제 5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5월 15일 (목) 13시 30분

[안전통지일 : 2025년 05월 0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4. 의결안건	25년 1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가결
5. 심의안건	25년 2분기 부실채권 책임심의			가결

- 2025년 제 6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6월 11일 (수) 14시

[안전통지일 : 2025년 06월 0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4. 의결안건	24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가결
5. 심의안건	25년 06월 부실채권 책임심의			가결

- 2025년 제 7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7월 29일 (화) 14시

[안전통지일 : 2025년 07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5년 상반기 내부감사 수행의 건			-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5년 2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5. 심의안건

25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 수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5년 상반기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수행의 건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재화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8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8월 05일 (화) 14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7월 3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	-	-	-	-
---	---	---	---	---

5. 심의안건

25년 3분기 부실채권 책임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 2025년 제 9차 감사위원회 : 2025년 09월 12일 (금) 15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9월 0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	-	-	-	-
---	---	---	---	---

5. 심의안건

25년 상반기 IT 부문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수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 2024년 제 10차 감사위원회 : 2024년 08월 19일 (화) 14시 50분

[안건통지일 : 2024년 08월 1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IT 외부감사 계획 보고의 건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5년 3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	-	-	-
5. 심의안건				
-	-	-	-	-

- 2025년 제 11차 감사위원회 : 2025년 11월 18일 (목) 10시 4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1월 1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정병각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	-	-	-	-
5. 심의안건				
25년 4분기 부실채권 책임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금세탁방지업무 독립적 감사실시 결과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협	이인걸	이호준	
1. 이사 성명	이상협	이인걸	이호준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외부감사인 연간감사계획 보고	특이사항없음			-
25년 하반기 내부감사 수행결과보고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26년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동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안건				
25년 하반기 내부감사협의회 점검 수행의 건 (영업한도 준수현황/PF 대출 관리의 적정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감사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검토 항목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독립성, 역할·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감사위원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이사의 서면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에서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가) 감사보조조직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으로 감사팀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21조)

(나) 감사보조조직 구성 : 팀장 1명, 팀원 2명

담당자 : 팀장(02-6312-6516), 박지훈 차장(02-6312-6524), 최부환 주임(02-6312-0113)

(다) 감사보조조직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일자	대상	보고사항 및 지원내용
2025.01.22	제 1 차 감사위원회	1.24년 부서감사 및 명령휴가제 수행 보고의 건
2025.03.12	제 3 차 감사위원회	1.제55기 결산 감사 보고 2.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 이행실적 및 결과보고
2025.04.10	제 4 차 감사위원회	1.2023년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조치요구사항 정리 보고
2025.07.29	제 7 차 감사위원회	1.25년 상반기 내부감사 수행의 건
2025.10.21	제 10 차 감사위원회	1.IT 외부감사 계획 보고의 건
2025.12.30	제 12 차 감사위원회	1.외부감사인 연간 감사 계획 보고 2. 25년 하반기 내부감사 수행결과보고

(라) 외부전문가 자문현황

2025년에 감사위원이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는 위험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위험관리기준 제16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이나 업무 수행, 그밖에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기 위해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 합니다. 이를 위해 위험관리위원회는 회계전문가,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025년에는 총 14회의 회의가 개최되어 분기별 위험관리현황을 평가·점검하고 적정 위험수준 부담을 위한 위험관리 전략 수립 및 내부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을 심의·의결합니다. (위험관리기준 제20조 제1호)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에 개최된 제21차 이사회에서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보고를 통해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심의·의결합니다. (위험관리기준 제20조 제2호)

신용 리스크(자산건전성 현황, 연체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 유동성 리스크(유동성비율 등), 운영 리스크(경영, 사무, 법규, 평판, 전산 리스크 등) 등 개별 리스크 측정 및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 사항에 대해 검토를 통해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합니다.

(다) 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심의·의결합니다. (위험관리기준 제20조 제3호)

자금운용 및 유가증권 투자현황에 대한 분석 및 관리 방침을 논의하며, 이에 따라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출채권 매입·매각에 관한 사항, 신상품 개발 관련 예상 리스크 및 관리방안,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위험관리기준 제20조 제4~11호)

나. 구성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 (위험관리기준 제18조) 및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16조 제4,5항)

2025년 12월 말 현재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전문가 이호준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회계전문가 이상협 사외이사와 금융전문가 이상협 사외이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구성원

(가) 위험관리위원회 구성현황

(2025.12.31 일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호준	사외	위원장	'25.12.30	'26.12.31
이상협	사외	위원	'25.12.30	'26.12.31
박응조	사회	위원	'25.12.30	'26.12.31

(나) 사임현황

(2025.12.31 일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사임일
-	-	-	-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5년에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14회 개최되었으며 97.6% 참석율로 운영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 된 안건은 총 34건이며(의결안건 22건, 보고안건 12건), 22건의 의결안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에 위험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위험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험관리 전략 수립 및 내부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2025년 제 1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1월 17일 (금) 14시 15분

[안건통지일 : 2025년 01월 1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4년 4Q 대손상각실적 및 회수 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4년 4Q NPL 채권 매각 결과 보고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	-	-	-	-

- 2025년 제 2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2월 10일 (월) 서면

[안건통지일 : 2025년 02월 0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2025년 1Q 무담보연체(개인)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5년 1Q 채무재조정(개인)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3월 05일 (수) 서면

[안건통지일 : 2025년 03월 0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NPL(기업)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4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3월 21일 (금) 서면

[안건통지일 : 2025년 03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NPL(기업) 여신 매입 및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5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4월 30일 (수) 서면

[안건통지일 : 2025년 04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4년 4Q 리스크관리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Q 대손상각 및 회수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5년 1Q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	-	-	-	-

- 2025년 제 6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5월 15일 (목) 15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5월 0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1Q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2Q 무담보연체(개인)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5년 2Q 채무재조정(개인)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7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5월 23일 (금) 서면

[안건통지일 : 2025년 05월 2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2025년 2Q NPL(기업)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예상에 따른 승인 요청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8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6월 13일 (금) 서면

[안건통지일 : 2025년 06월 1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1Q 리스크관리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2Q NPL(기업)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예상에 따른 승인 요청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9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8월 05일 (화) 15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8월 0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2Q 대손상각 및 회수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5년 2Q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3Q NPL(기업)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5년 3Q NPL(개인)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10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09월 12일 (금) 14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9월 1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불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2Q 리스크관리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3Q NPL(기업)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	찬성	가결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예상에 따른 승인 요청의 건	찬성	-	찬성	가결

- 2025년 제 11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10월 21일 (화) 09시 4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0월 1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증권 집합투자증권 세부운영기준 제정의 건	반대	반대	반대	부결
자동차대여사업자대출 상품 취급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유가증권 본부별 투자한도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12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11월 07일 (금) 13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1월 0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
4. 의결안건				
PF 대출 조건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13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11월 18일 (화) 10시 20분

[안건통지일 : 2025년 11월 1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3Q 대손상각 및 회수실적	특이사항없음			-
2025년 3Q 채권 매각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5년 4Q NPL(기업)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5년 4Q NPL(개인) 여신 매각에 관한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에 따른 승인 요청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5년 제 14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12월 04일 (목) 09시

[안건통지일 : 2025년 12월 0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1. 이사 성명	이호준	박응조	이상협	-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5년 3Q 리스크관리 평가 결과	특이사항없음	-
2025년 위기상황분석 결과	특이사항없음	-

4. 의결안건

2026년 운용 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6년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6년 총당금 적립기준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는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점검 항목에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독립성, 역할·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험관리위원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이사의 서면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에서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라. 위험관리 전담조직 등

(1) 위험관리 전담조직

당사는 위험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위험관리책임자 총괄 하에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기준 제 26 조)

(2)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성

(가) 지원부서 : 리스크관리팀

(나) 조직구성 : 팀장 1명, 팀원 1명

- 담당자 : 복현수 팀장(02-6312-6575), 이아영 주임(02-6312- 6515)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 계획

2025 년에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는 없었습니다.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가.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활동 내역

2025 년에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승인한 내역 또는 이사회가 내부통제 취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징계조치를 요구한 내역은 없습니다.

나. 기타

2025 년에 기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HB 저축은행은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의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보수체계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HB 저축은행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수위원회는 HB 저축은행 이사회운영규정 제 10 조 제 4 호를 그 근거로 하여 2022년 12월 30일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 제 10 조 제 2 호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의사록에 의사의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는 당사 보수위원회규정 제 4 조 제 1 항에 의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1 항 및 4~5 항)

2025년 12월 말 현재 HB 저축은행 보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전문가인 이상협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법률전문가 정재욱 사외이사와 금융전문가 박응조 사외이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상협, 박응조 사외이사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보수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2023년 08월 23일 제 2차 임시주주총회 이후 구성원 현황

성명	직명	사외이사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여부)	회사의 금융, 법률, 회계 또는 재무분야 증서한 경험	약력
이상협	위원장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有	에이블컨설팅 전무
정재욱	위원	사외이사 (해당사항없음)	有	법무법인 LKB 평산
박응조	위원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有	퍼시픽캐피탈 대표이사

■ 2025년 03월 31일 제 55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구성원 현황

- 변동사항 없음

■ 2025년 12월 30일 제 1차 임시주주총회 이후 구성원 현황

- 변동사항 없음

(2) 구성원

(2025.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상협	사외	위원장	'25.12.30	'26.12.31
정재욱	사외	위원	'25.12.30	'26.12.31
박응조	사외	위원	'25.12.30	'26.12.31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HB 저축은행은 보수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 보수위원회규정 제 3 조 및 지배구조법 제 22 조 제 1 항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HB 저축은행의 성과보상 대상자의 결정, 성과연도 성과기준, 성과목표 이행실적에 따른 보상기준과 지급 방법, 보수체계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이를 위해 보수위원회는 법률 및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다만, 보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2025년에는 총 1 회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2025 년도 보수체계연차보고서 검토, 비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 승인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보수위원회규정 제 3 조 제 1~3 호)

이에 따라 2025 년 02 월 13 일 개최된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2024 년 성과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을 심의·의결하였고, 2026 년 02 월 12 일 개최된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는 2025 년 성과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보수위원회규정 제 3 조 4 호)

이에 따라 2025 년 02 월 13 일 개최된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2024 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였고, 2026 년 02 월 12 일 개최된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는 2025 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으로 의결하였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일 20 일 전부터 HB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 일까지 추가로 공지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25년 02월 13일 개최된 제 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타사대비 당사의 보수체계는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관련 소집방법, 결의방법 등은 당사 보수위원회 규정을 따릅니다.
(보수위원회 규정 제 6~7 조)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는 2025년 02월 13일 개최된 제 1차 보수위원회 및 2026년 02월 12일에 개최된 제 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HB 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체계는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기준의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는 2025년 02월 13일 개최된 제 1차 보수위원회 및 2026년 02월 12일 개최된 제 1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 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HB 저축은행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HB 저축은행의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은 모든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게 적용됩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HB 저축은행은 보수위원회규정 제 3 조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임원 및 업무담당자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5년 02월 13일 개최된 제 1차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상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주를 결정하였습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7 조 제 2 항에 따라 기타 투자금융, 외환 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 딜링에 종사하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와 개인의 단기실적에 연동되는 성과보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수 있는 기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자는 없습니다.

해당 범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임원은 대표이사 1명, 상근감사위원 1명, 업무집행책임자 5명, 총 7명입니다. 기타 금융투자업무담당자와 기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7명	대표이사 1명 상근감사위원 1명 업무집행책임자 5명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대상자	-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사외이사 이상협)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5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25년에는 보수위원회는 총 1회 개최되었으며 100% 참석율로 운영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 된 안건은 총 2건(의결 안건 2건)이며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3) 회의개최내역

- 2025년 제 1차 보수위원회 : 2025년 02월 13일 (목) 15시

[안건통지일 : 2025년 02월 0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이상협	정재욱	박응조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4. 의결안건				
2024년 보수체계연차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평가

HB 저축은행 보수위원회는 2022년 12월 30일에 설립되어, 2023년부터 보수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당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매분기마다 보수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구체적 점검 항목에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독립성, 역할·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보수위원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이사의 서면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에서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보수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HB 저축은행은 전사 및 각 본부별 경영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측정을 정량평가와 업무수행평가 및 정성평가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자본적정성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성은 총당금반영전 영업이익 및 여신평잔대비 영업수익, 가용자금 운용수익, 비용의 절감 및 효율화 등을 측정하고, 성장성은 신규취급액 및 잔액 등의 양적 성장을 측정하고, 건전성은 고정이하여신비율, 보고연체율 및 연체회수율 등을 측정하며, 자본적정성은 BIS 비율을 측정합니다.

업무수행평가는 각 본부별 사무 분담된 업무를 바탕으로 측정하며, 정성평가는 각 본부별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과제의 이행도를 측정합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직원의 성과 측정은 위에서 언급한 각 본부별 경영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측정을(정량평가, 업무수행평가, 정성평가) 활용하며, 임원의 성과 측정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활용합니다.

단,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업무성과 목표 설정 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별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각 경영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측정(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에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최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임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 금액 중 6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3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 정책

성과보수는 3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연계하여 부정적인 성과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 발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성과별 책임범위에 상응하여 당기 현재 보수액과 과거 발생분에 대한 미래 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성과보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및 사업부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은 실현된 부정적 성과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 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는 전액 현금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지급 의결 시 60%는 즉시 지급하고 40%인 이연 보수액은 지급 예정금액으로 확정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HB저축은행의 성과보수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수체계의 독립성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의 경우 업무성과 목표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고유 직무에 대한 성과측정을 통해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서별 고유 직무에 따른 업무수행평가 및 정성평가를 활용하여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 일반직원의 보수 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HB 저축은행은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직무가치의 향상, 일반 직원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을 위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HB 저축은행 보수체계 중 연봉제는 계약연봉인 기본급여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하고, 개인별 임직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외 일반상여금(상여금 등)과 포상금, 경조금 등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직원들에게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2025년에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은 없었습니다.

(7)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HB 저축은행은 보수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경우 보상체계의 위험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을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 HB 저축은행의 보수체계상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2024년)	53.9억	-806.1억	-0.1%	94명	0.57억
당해년도 (2025년)	52.1억	-325.2억	-16.0%	96명	0.54억

* 상기 금액 및 임직원수는 퇴직인원을 포함한 수치임

주 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

주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 전년도(2024년)는 2023년말 및 당해년도(2025년)는 2024년말 금액

주 3) 임직원 수는 보수 지급 내역에 대한 총 인원수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원		직원						합계
		등기	비등기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전년도 (2024년)	보수총액	7명 4.5억	6명 6.6억	14명 11.5억	9명 6.2억	8명 4.9억	18명 10.0억	20명 7.6억	12명 2.7억	94명 53.9억
	성과보수액	-	-	-	-	-	-	-	-	-
당해년도 (2025년)	보수총액	7명 4.8억	9명 6.5억	14명 10.2억	11명 6.0억	7명 4.9억	17명 8.5억	25명 9.7억	6명 1.5억	96명 52.1억
	성과보수액	-	-	-	-	-	-	-	-	-

* 상기 금액 및 임직원수는 퇴직인원을 포함한 수치임

(3) 직급 및 성별 구분별 평균 보수액(임직원 1인당 평균액)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임직원 평균 보수
		등기	비등기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전년도 (2024년)	남성	0.64억	1.11억	0.82억	0.74억	0.60억	0.59억	0.41억	0.17억	0.65억
	여성	-	-	0.85억	0.24억	0.67억	0.49억	0.35억	0.25억	0.39억
	전체	0.64억	1.11억	0.82억	0.68억	0.61억	0.55억	0.38억	0.22억	0.57억
당해년도 (2025년)	남성	0.69억	0.73억	0.75억	0.54억	0.69억	0.49억	0.35억	0.14억	0.58억
	여성	-	-	0.68억	-	0.70억	0.53억	0.42억	0.28억	0.46억
	전체	0.69억	0.73억	0.73억	0.54억	0.69억	0.50억	0.39억	0.26억	0.54억

주) 개별 항목은 직급 및 성별에 따른 1인당 평균보수액(보수총액/임직원수)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대상	
전년도 (2024년도)	임원	7명	8.8억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당해년도 (2025년도)	임원	7명	8.3억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

* 상기 금액 및 임직원수는 퇴직인원을 포함한 수치

주 1)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 기준

주 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 (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24년도)	임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당해년도 (2025년도)	임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주 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 (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산정.

주 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 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 년도 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 1) 주 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 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

(3) 이연보수액 보수의 구분(해당 년도 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24 년도)	임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당해년도 (2025 년도)	임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주 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

주 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 년도 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4 년도)	임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당해년도 (2025 년도)	임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 년도 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 년도 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24년도)	임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당해년도 (2025년도)	임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주) 해당 년도 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 년도 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25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5년(t기)발생분, 2024년(t-1기)발생분, 2023년(t-2기)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축소액 ^{주1)}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전년도 (2024년도)	임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당해년도 (2025년도)	임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주 1) 해당년 직전 년도 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 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 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 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 (해당 년도 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 인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4 년도)	임원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당해년도 (2025 년도)	임원	2	1.35	0.75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	-

주 1)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첨부 1]

정 관

2002. 03. 18. 제정
2015. 05. 20. 개정
2016. 05. 25. 개정
2016. 11. 01. 개정
2017. 08. 11. 개정
2019. 03. 22. 개정
2019. 08. 22. 개정
2020. 07. 29. 개정
2020. 11. 02. 개정
2021. 01. 21. 개정
2021. 12. 20. 개정
2022. 12. 30. 개정
2024. 08. 1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저축은행은 주식회사 HB저축은행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HB SAVINGS BANK라 표기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목적) 이 상호저축은행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자금의 대출업무
 5. 어음의 할인업무
 6. 내. 외국환업무 <개정 2020.07.29.>
 7. 보호예수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개정 2020.07.29.>
 - 8의2. <삭제 2020.07.29>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개정 2020.07.29.>
 10.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개정 2020.07.29.>
 11.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 및 대금의 결제(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0.7.29.>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 판매 및 대금의 결제(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0.7.29.>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개정 2020.07.29.>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개정 2020.07.29.>
-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에 한함
16.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보증 <신설 2020.07.29.>
 17.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신설 2020.07.29.>

제3조(영업구역) 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특별시로 한다. <개정2019.08.22.>

제4조(사무소) ① 이 저축은행의 주된 사무소(본사)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2019.08.22.>

② 이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19.08.22. 개정 2024.08.14.>

제5조(공고의방법) 이 저축은행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bsb.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

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일간지)에 한다. <개정2021.12.20>

※공고방법으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관련규정 : 상법 289조, 상법 시행령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업무방법서) ① 이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업무방법서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9.08.22.>

② 저축은행이 업무의 종류 및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9.08.22.>

제2장 자본금과 주식

제8조(저축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저축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만주로 한다. <개정2019.08.22. 개정 2024.08.14.>

제9조(1주의 금액) 이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개정2019.08.22.>

제10조(주식의 종류) 이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개정2019.08.22.>

제11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저축은행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00주로 한다. <개정 2019.08.22.>

제11조2(주권의 종류) 이 저축은행이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2019.08.22.>

제12조(신주인수권) ① 이 저축은행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2019.08.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의2 (동등배당) 이 저축은행은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개정2019.08.22. 개정 2024.08.14.>

제1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저축은행은 임.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2019.08.22.>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 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저축은행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개정2019.08.22.>

3.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개정2019.08.22.>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9.08.22.>

⑧ 삭제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주식 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 또는 이사가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조(주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상계금지) 이 저축은행의 주주는 주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저축은행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2019.08.22.>

제15조(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2019.08.22.>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개정2019.08.22.>
-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② 삭제

제17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저축은행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한다. <개정2019.08.22.>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2019.08.22.>

③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저축은행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개정2019.08.22.>

*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이 저축은행의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개정2019.08.22.>

③ 이 저축은행은 임시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9.08.22.>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전자등록하여 주주 확정 방법으로 주주명부폐쇄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주주 명부 폐쇄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함.

[주석신설 2024.08.14.]

제19조(질권의 등록) ① 저축은행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축은행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는 저축은행의 주주명부 및 주권에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22.>

③ 이미 설정된 질권이나 신탁재산의 표시의 말소 또는 전질이나 질권이동의 등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20조(권리자의 신고) ① 주주,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인감 또는 서명을 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한다. <개정2019.08.22.>

② 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공증에 의한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법정대리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저축은행이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개정2019.08.22.>

제21조(주권의 오손 및 상실과 재교부) ① 주권을 오손하였을 때에는 저축은행에 구주권을 제출하고 신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첨부한 주권의 진위를 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손하였을 때에는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상세한 설명 또는 확실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2019.08.22.>

②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저축은행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9.08.22.>

제22조(사채의 발행) ① 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개정2019.08.22.>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 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주주총회

제23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3. 이사 임면<개정2021.12.20>
4. 자본의 감소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합병
6. 결산 및 저축은행의 재산상 중요한 사항 <개정2019.08.22.>
7.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개정2021.12.20>
8.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개정2021.12.20>
9. 삭제
10.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소집시기) ① 이 저축은행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개정2019.08.22.>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의2(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21.12.20>

제24조의3(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저축은행은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9.08.22.>

- ② 및 ③ 삭제

제24조의4(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내지 ⑦ 삭제

제25조의2(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의3(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5조의4(의결권 제한) ① 이 저축은행,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저축은행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개정 2019.08.22.>

-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출석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5(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19.08.22.>

② 저축은행은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9.08.22.>

제25조의6(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7(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5조의8(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2019.08.22.>

② 이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2019.08.22.>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08.22.>

제25조의9(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개정2019.08.22.>

※ 관련규정 : 상법 제368조의4, 상법시행령 제13조

제26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이사 . 이사회

제27조(이사의 수) ① 이 상호저축은행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2021.12.20>

제27조의2(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3(사외이사 자격기준)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07.29.>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내에 5년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27조의5 삭제

제27조의6(업무집행책임자) ① 이 저축은행은 업무집행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받아 집행한다. <개정2019.08.22.>

② 업무집행책임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28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개정2021.01.21.>

제28조의2(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7조에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7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미달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상호저축은행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의 결의로 저축은행장(대표이사), 부저축은행장(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저축은행장(대표이사)를 선임한다. <개정2021.12.20>

제30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2019.08.22.>

② 부저축은행장(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9.08.22.>

제31조(이사회에의 권한) ① 이 저축은행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2019.08.22.>

【주주총회 관련사항】

1.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 1의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2의2.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일반경영 관련사항】

4.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예산(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중요한 차입,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상 고정자산 매입 또는 투자유가증권 매입 등
7. 대출운용기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임원 관련사항】

8. 주요 규정. 기준의 제. 개정 또는 폐지
9. 상법 제397조 내지 제398조에 의한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및 이사 등의 자기 거래 승인
10.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 선임 및 해임
- 10의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0의3. 대주주·임원 등과 이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2019.08.22.>
11.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사항】

12.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결정
13. 자본금 변경, 제준비금 자본전입
14. 자산 재평가

【기타사항】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16의 1.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6의 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2024.08.14.>
 17.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개정2019.08.22.>
 18. 본점의 이전, 지점(출장소) 설치, 이전 및 폐지
 19. 저축은행의 자기주식 취득
 20. 자회사의 설립(인수) 및 매각
 21. 주주총회 위임사항
 22.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적인 경영분석 보고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 지배인 선임·해임

2. 지점(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제32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 상호저축은행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 ②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 ⑥ 이사회 소집통지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의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⑧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7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제33조(이사회회의 결의 방법)**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 제34조(이사회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제35조(저축은행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2019.08.22.>

-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6조(저축은행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8.22.>

제36조의2(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저축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②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주주의 유지청구권 및 대표소송) ①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2021.12.20.>

제38조 및 제38조의2 삭제

제39조(고문) 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약간 명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2019.08.22.>

제39조의2(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금규정에 의한다.

제5장 이사회내 위원회 [본장신설 2021.12.20.]

제39조의3(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내 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② 법령과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내부통제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우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회가 보수위원회(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미만 저축은행)를 대체하는 경우 보수위원회를 기재하지 아니함.

[본조신설 2021.12.20. 주석신설 2024.08.14.]

제39조의4(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며, 이 상호저축은행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그 후보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본조신설 2021.12.20.]

제39조의5(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2/3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② 감사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③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9조의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다.
- ⑤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9조 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해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⑦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맞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맞도록 조치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원(동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과 대표이사등(동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을 말한다)이 동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개정 2024.08.14)
- ⑨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⑩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12.20.]

제39조의6(위험관리위원회)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20.]

제39조의7(보수위원회) ① 보수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② 보수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③ 보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2.02.]

제6장 회 계

제40조(사업연도) 이 저축은행의 매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2019.08.22.>

제41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승인, 공고) ①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1.12.20.>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상법 제447조의4 제2항의 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1.12.20.>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 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제44조(이익금의 처리) ① 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2019.08.22.>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5조(이익의 배당) ① 저축은행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2019.08.22. 개정 2024.08.14.>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금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법정준비금의 액

4.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② 저축은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2019.08.22.>

③ 이 상호저축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은 배당기준일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 배당 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다.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회사는 주식배당에 관하여 주주총회일 전일 또는 그 이전의 날을 배당기준일로 정하여야 한다.

[주석신설2024.08.14.]

제45조의2(중간배당) ① 저축은행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2019.08.22.>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의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개정 2024.08.14〉

④ 〈삭제〉

제46조(회계규정) 이 저축은행의 회계처리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가 제정하는 회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1.12.20.〉

제46조의2(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2019.08.22.〉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저축은행에 귀속한다. 〈개정2019.08.22.〉

제46조의3(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상호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개정2021.12.20.〉

※ 인터넷홈페이지 공고기간은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임(관련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주석신설 2021.12.20]

제7장 보 칙

제47조(법령 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8조(정관의 변경) 상호저축은행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정관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7.29.〉

제49조(변태설립사항) 삭제

부 칙

1. (구업무의 정리)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유사 상호저축은행 업무는 별도 계정을 두어 정리한다.

2. (동전) 종래의 업무가 종결될 때에는 사업년도말 이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손익상황을 확정 공고하고 당해년말에 이르러 당해연도의 업무실적과 합산정리 한다.

개정일 년 월 일

부 칙

이 정관은 2002. 3.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7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0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 조항은 2024.07.03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는 2024.07.03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설치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2022.01.27. 제정

2022.06.30. 개정

2022.12.30. 개정

2025.04.1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식회사 HB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이 주주와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 ①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제정·변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저축은행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시 및 그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상호저축은행법, 지배구조법, 상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을 말하고, 그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 법률"이라 한다),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 현황

제5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6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선임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⑥ 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저축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 제9조(이사회 권한)** ①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 임원 등과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경영분석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 및 의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지배구조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⑥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저축은행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는 저축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이사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2조(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할 수 있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려는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 퇴임사유 및 절차) ① 이사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 2.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 3. 관련 법률, 정관 등에서 정한 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경우
-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일 1주간 전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그 소집 회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제16조(의결권 행사 방법) ① 이사회 의결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제1항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17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그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는 자기평가, 저축은행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구성·기능

제18조(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축은행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감사위원회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 ②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 의결은 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이 규범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의 대표(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로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⑤ 이 규범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및 소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소집절차를 단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 받아 보관 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 후보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을 적용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관계자의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그 역할 및 권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3. 지배구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4.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그 밖에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
- ⑧ 감사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30조의2의 제1항에 따른 임원과 대표이사가 각각 동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⑨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⑩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감사위원에게 개최일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험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단, 소집절차를 단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 받아 보관 한다.

제22조(보수위원회) ① 보수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③ 보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④ 보수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단, 소집절차를 단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 받아 보관 한다.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23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재선임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 제24조(임원별 자격요건)** ①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8조를 각각 적용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저축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절 임원의 권한·책임

- 제25조(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 ① 저축은행은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 대표이사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 등의 권한과 책임) 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27조(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① 준법감시인은 저축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29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④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다.

제31조(임원의 퇴임) ① 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적용한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임자(선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의 해임 의결로 퇴임한다.
-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의 해임 결의로 퇴임한다. 이 경우 해임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 따라 대표이사가 해임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32조(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① 저축은행은 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저축은행은 임원의 경영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저축은행에서 정한 내부 또는 외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① 저축은행은 사내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내부 또는 외부 교육 및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저축은행은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34조(임원 성과평가 등) ①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임원의 담당업무 성과 등에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임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 보수지급 등에 활용한다.

제35조(보수의 지급) ①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체계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촉(또는 위임)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36조(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매년(또는 매 사업연도)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7조(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시기) ① 최고경영자(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영승계 절차(이하 "경영승계 절차"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개시된다.

1.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2.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제7조 및 제8조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이사회가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기 만료 30일 전
2. 제1항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후
3. 제1항 제3호의 경우 경영승계 절차 개시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제38조(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저축은행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저축은행 운영 및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39조(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계획)** ①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최고경영자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지체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의 경영승계 절차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 제4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의 관리업무를 인사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인사담당 부서는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 제41조(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 제42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저축은행,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43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4조(최고경영자의 임기 및 역할 등)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주주총회 의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관련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최고경영자의 평가 및 퇴임) ①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주주총회는 최고경영자가 최고경영자로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임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자는 사임·임기만료·관련법률 등에서 정한 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임한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2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2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범이 정한 사항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부칙(법률 제13453호, 2015.07.31) 제2조 내지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부칙이 정하는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25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이 규범이 정한 사항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부칙(법률 제19913호, 2024.01.02) 제2조 내지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부칙이 정하는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회운영규정

2020. 10. 28. 제정
2022. 08. 17.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23. 09. 15. 개정
2024. 10. 14. 개정
2025. 04. 10. 개정
2025. 05. 15. 개정
2025. 09. 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총 이사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매년 선임하며, 의장의 유고 또는 결위 시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의장은 이사회 의장이 사전에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로 하여금 이사회의 부의된 안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소집)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아니할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소집통지)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소집 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이사회 개최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소집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소집절차를 단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 받아 보관 한다.

제7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결의사항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주주총회 관련 사항】

1.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1의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2의2.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배당 규모와 방법의 결정

3의2.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일반경영 관련 사항】

4. 중장기 경영계획,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예산(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소송 및 차입, 건당 자기자본의 0.5%를 초과하는 중요한 계약,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고정자산 매입 또는 투자유가증권 매입 및 처분 등. (유가증권 투자규정에 의한 여신성 투자는 제외) 다만, 경영권의 확보 및 이양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를 득한다.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안건을 부의할 이사회 개최 전 회

계연도말 또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중 최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7. 대출운용기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임원 관련 사항】

8. 주요 규정, 기준(이사회운영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위험관리 기준, 내부회계 관리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준법감시인직무규정, 내부통제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채무조정 내부기준,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의 제·개정 또는 폐지 다만, 관계법령과 규정 및 사규 등의 개정 또는 단순한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개정의 경우 직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9. 상법 제397조 내지 제398조에 의한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및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9의2.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10.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10의2.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장 및 위원 선·해임

10의3. 최고 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10의4. 대주주·임원 등과 이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10의5 주요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 재무관리, 리스크관리 등의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 인 경영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이사의 개별 보수 및 기타 보상의 결정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사항】

12.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결정

13. 자본금 변경, 제 준비금의 자본전입

14. 자산 재평가

【기타 사항】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6.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6의 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7.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18. 본점의 이전, 지점(출장소) 설치, 이전 및 폐지

19. 저축은행의 자기주식 취득

20. 자회사의 설립(인수) 및 매각

21.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자산의 매각 (단, NPL채권 매각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 매각 정책에 따라 대표

이사에게 매각의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함), 자본의 지출, 출연 및 기부

22.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고정자산외 자산의 매입 (단, NPL채권 매입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매입 정책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매입의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함)

23. 주주총회 위임사항

24.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 결산 및 주요 경영실적 등 종합적인 경영분석 보고
2. 분기 NPL채권 매각 및 매입 현황
3. 분기 자금운용 현황
4.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5. 법적 분쟁현황 등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7.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연간 일정
8. 그 밖에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제11조(긴급조치) 대표이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사록)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사회 소집통보서, 의결서 및 안건의 부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0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

2021.12.20. 제정

2022.12.3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 및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이사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회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최초 사외이사 선임일자 순으로, 위 선임일자가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역할)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선임할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원칙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물색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검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각 후보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관계회사와 여신거래가 있는 경우 관계회사의 여신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여신취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검증하고, 동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소집절차를 단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 받아 보관 한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상시적인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추천에 관한 사항
3.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연 2회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해당 후보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본인이 후보로 추천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후보로 추천하지 못한다.

제7조(추천절차 및 공시) ①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사외이사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② 대표이사, 사외이사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지배구조 공시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외이사 후보 인선 자문단 운영)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후보 인선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계인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또는 외부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주관부서) 위원회에 관련된 실무의 주관부서는 직제규정에서 지배구조담당 업무 부서로 한다.

〈부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규정

2021.12.20. 제정

2022.11.18. 개정

2022.12.30. 개정

2025.04.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당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팀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의 선정
5. 외부감사인의 해임 요청
6.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7.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8.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9.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리조치와 보고에 대한 점검·평가를 진행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요구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구성

제8조(선임)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제9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해당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 대표이사는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권한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② 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간사 또는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상근감사위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 ④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회의

- 제12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 당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3조(소집절차)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②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결의사항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5)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감사에 관한 사항

- (1) 감사계획의 수립
- (2)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 (3) 내부감사팀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4) 외부감사인의 선정
- (5) 외부감사인의 해임 요청
- (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사항
-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사항
- (8)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0) 내부회계 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승인

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 (1)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 (4) 내부통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마. 기타

- (1)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심의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 (1)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2)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3)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 (4) 회사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 (5)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 (6) 준법감시인의 보고사항
- (7)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 (8)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나. 기타

- (1)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8조(상근감사위원의 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여신심사위원회 부의 안건중 동일인여신한도 준수사항, 출자자와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취급과 관련된 안건)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②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상근감사위원은 전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이외에 중요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보조조직) ①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제22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 임기의 적용례) 제9조 제2항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감사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위험관리기준

2022.12.30. 제정

2024.05.2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및 위험관리 조직의 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Risk)”이라 함은 저축은행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이 자기자본 또는 수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말한다.
2. “종합위험관리”라 함은 저축은행 경영상 발생 가능한 개별 리스크(자회사 리스크 포함)를 인식하고 통일된 공통지표를 사용하여 그 규모를 통합 측정하며, 설정된 리스크 한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통제 및 보고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위험성향(Risk Appetite)”이라 함은 저축은행의 경영목표 및 전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위험부담수준으로 진행 수준의 장부자본에 대한 경제적자본(경제적자본/장부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4. “신용리스크”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한다.
5. “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 환율, 주가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트레이딩 포지션으로부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6. “ALM리스크”라 함은 자금(금리)만기 불일치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금리리스크 : 시장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하여 은행의 순자산가치 또는 순이자수입 (NII)이 감소하는 위험
 - 나. 유동성리스크 : 예상치 못한 자금의 수요/공급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7.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하거나 평판이 저하될 위험을 말한다.
8. “자회사리스크”라 함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자회사의 순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저축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직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등 상위 의사결정 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험관리기준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2장 위험관리 기본방침

제4조(위험관리 목표) 위험관리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가치 창출의 극대화와 은행의 자본 보호
2. 저축은행의 전략사업 및 재무목표 달성의 촉진
3. 수익 및 적정 자본금 수준의 관리와 수익 및 위험의 최적화를 통한 저축은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
4. 적정 신용등급의 유지
5. 적절한 위험 분산
6.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 명확화와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평가 지원

제5조(위험관리 원칙) 위험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Risk)은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위험관리 조직과 보고체계는 영업부문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견제와 균형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위험 허용 한도는 전행적으로 은행의 수익 창출 능력과 자기자본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위험 측정, 평가 및 보고는 통일된 지표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특정 부문에의 과도한 위험(Risk)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산하여야 한다.
6. 위험관련 전산기술(Risk Technology)은 종합위험관리체계 구현을 위하여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관리 역할과 책임) 본부 각 부서가 위험관리에 관한 적절한 관리능력과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본부 각 부서에 일부 역할과 책임을 분산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관리

제7조(위험관리 대상) ① 저축은행은 그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 수행, 그 밖에 각종 거래 과정에서 자기자본 또는 수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인 위험을 관리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위험 종류를 정한다.

제8조(위험관리 절차) 위험관리는 위험 인식,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 보고의 절차에 따른다.

제9조(위험 인식) 위험관리책임자 등 위험관리담당자(이하 “위험관리담당자”라 한다)는 저축은행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파악 및 분석한다.

제10조(위험 측정) ① 위험관리담당자는 위험 종류별로 측정방법을 정하여 위험측정시스템에 이를 구현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종합적 측정 및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잠재적 영향을 포함한다)도 측정·평가한다.

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저축은행의 규모 및 복잡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측정기준을 사용하되,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측정한다.

③ 측정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결과과정과 방법론, 데이터의 출처, 기본가정, 시스템 설계요건 등 측정모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 모니터링 및 통제) ① 위험관리담당자는 위험한도 대비하여 위험부담액 등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② 위험관리담당자는 한도 초과시 그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 보고) ① 위험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한다.

1. 위험은 계량화하여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험은 그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보고한다.

3. 위험은 적시성 및 일관성 있게 보고한다.

② 위험관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전행적인 위험관리 현황을 종합 분석하여 위험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한다.

제13조(위험관리 비상 상황) ① 금융사고, 긴급 상황 등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는, 저축은행 임직원과 위험관리담당자는 단계별 결재라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결재권자에게 위험현황을 보고하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보고를 받은 결재권자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위험수준 등

제14조(위험수준) 저축은행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수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설정한다.

1. 위험 종류·한도와 이에 따른 위험 조합(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 및 거래 한도 등 설정·운영도 포함한다)

2. 주주 요구수익률과 이에 따른 위험 성향(위험 선호, 중립 또는 회피) 반영

3. 저축은행의 전략, 사업목표, 수익성 목표 및 자본수준과의 조화

4. 신규사업시 필요한 자본량 또는 확률 예상치를 넘어서는 손실에 대비한 완충자본 등의 적정 규모

5. 기타 저축은행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환경의 변화

제15조(적정투자한도 등) 위험관리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그 위험성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투자한도, 손실희용한도를 정한다.

1. 개별 위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측정수단에 의한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3. 측정가능한 위험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연 1회 이상 설정하여 관리하고 경영환경 및 영업전략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위험관리 조직

제16조(위험관리 조직 구성) 위험관리 조직은 의사결정기구인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책임자 및 위험관리실무조직으로 구성한다.

제1절 위험관리위원회

제17조(적용범위)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위험관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 선임되며,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는 산하로 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및 통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 당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②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2. 회의 소집은 개최일의 7일 전에 통지하고 안건을 배포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안건의 성격 상 실무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단, 해당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위원들의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위험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 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출채권 매입·매각에 관한 사항
8. 신상품 개발 관련 예상 리스크 및 관리방안
9.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관계법령 및 감독당국의 지도, 타 규정 등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11.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권을 가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위험관리책임자 및 위험관리실무조직

23조(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① 저축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둔다.

② 저축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저축은행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맞는 사람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며, 효과적으로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저축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는 경우에 관련 사실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석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3. 위험관리정보시스템 운영
4. 이사회, 임원, 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험관리정보를 적시에 제공

5.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하다고 이사회, 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한 사항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하여 임직원이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25조(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성 확보)** ① 저축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제23조 각 호의 업무 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저축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26조(위험관리 실무조직)** ① 위험관리 실무조직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위험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위험관리 실무조직은 일선 영업 부문과 독립적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한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위험관리 실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
 2. 위험관련 정보 수집 및 위험관리 시스템 운용
 3. 위험 허용한도의 준수여부 상시 감시 및 한도초과 시 대책수립
 4. 주기별 위험관리 현황 및 실태 점검
 5.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이행
 6. 제2호 내지 제5호의 결과에 대한 보고

제6장 임직원 준수사항 등

- 제27조(임직원 준수사항 등)** ① 저축은행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관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하면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 제28조(개별 위험관리)** 위험관리책임자 및 위험관리 실무조직은 각 개별 위험에 대한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개별 위험 관리 실무부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원칙과 절차의 이행을 위한 세부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29조(장부외거래 작성 등)** ① 저축은행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장부외거래기록”이라 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② 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상대방·규모·조건·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따른 회사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저축은행은 장부외거래기록을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험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 및 자구 수정 등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전결로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12.30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이 규정의 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은 폐쇄한다.
② “리스크관리 시행세칙”을 “위험관리기준시행세칙”으로 명칭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05.23 시행한다.

보수위원회운영규정

2022. 12. 30. 제정

2023. 03. 14. 개정

2023. 04. 25.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이치비저축은행(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위원회는 보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성과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2. 임원 성과보수 규정 제·개정
3.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기본금(연봉)의 산정 및 조정
5. 기타 법령,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 및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이사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출장, 휴가 등 기타 사유)에는 선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임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6조(회의 성립 및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소집한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소집절차를 단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 받아 보관 한다.

제7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와의 관계)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②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된 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는 이를 차기 이사회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0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의안,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보칙)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

제12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